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임호선 · 안도걸 · 문대림
이원택 · 이재관 · 김주영
정준호 · 강준현 · 복기왕
최혁진 · 김교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

항제6호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